

「디지털금융법의 최근 동향과 정책 과제」 학술대회 참석 결과보고

(2025.4.14., 금융중심지1팀, 이주영)

1 출장 결과 보고

□ 행사 개요

- (행사명) 2025년 춘계 한국경영법률학회 · 디지털금융법포럼 공동학술대회
- (주 제) 디지털금융법의 최근 동향과 정책과제
- (일 시) 4. 11(금) 13:30~17:30
- (장 소) 법무법인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 강당
- 프로그램

시간	프로그램
13:50-14:10	개회식
주제발표	
14:10-14:50	<1주제> 금융보안에 대한 소고 사회: 김정혁CISO((주)한패스, 서울사이버대 겸임교수) 발표: 서호진 부장(금융보안원) 토론: 이혁 교수(부산대), 명지영 현대해상자문(전 현대해상상무)
14:50-15:30	<2주제> 금융 분야 인공지능에 대한 소고 사회: 강대섭 교수(부산대 법전원) 발표: 김태주 변호사(법무법인 광장) 토론: 김성웅 실장(금융보안원), 이정두 센터장(금융연구원)
브레이크 타임	
15:50~16:30	<3주제> 가상자산 2단계 입법 - 가상자산거래소 이해상충 규제방안을 중심으로 사회: 강현구 변호사(법무법인 광장) 발표: 류경은 교수(고려대) 토론: 김갑래 박사(자본시장연구원), 이유진 변호사(법무법인 지평)

16:30-17:10	<4주제> 가상자산 법인 실명계좌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고찰 사회: 류혁선 교수(KAIST) 발표: 한서희 변호사(법무법인 바른) 토론: 이효경 교수(충남대), 김남희 변호사(두나무)
17:20-17:30	폐회식

2 금융보안 정책 최신 동향

□ 전자금융거래법령 보안 관련 사항

- 전자금융관련 보안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에서 제21조의5,6에서 모두 규제
 - 동 법령에 근거한 전자금융감독규정에 293개의 감독규정이 있으나 2025년 2월 시행되는 개정안에서는 166개로 조정(원칙 중심 조정)

□ 전자금융거래법령 개정 방향

- 이사회 등 경영진의 보안에 대한 역할·책임 제한
 - 이사회 등 경영진의 보안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전사적 보안투자에 소홀
- CISO(정보보호최고책임자) 독립성 부족, 권한행사 제한적
 - CISO는 CRO(최고수익책임자)나, CIO(정보기술최고책임자) 산하로 편재되어 있는 바, 이에 대한 위상 및 권한 확대 필요성
- 원칙 중심 규제, 자율 보안
 - 과거 사전통제방식으로 규제하였으나, 원칙 중심 규제 및 자율 보안방식 도입
- 제3자 관리 법적기준 부재
 - 클라우드 등 제3자 의존도가 증가하므로,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
- 금융회사의 보안 사고 결과책임 강화 필요
 - 현재는 과징금 부과 사유가 한정적(거래정보의 타인 누설시에만 부과)
 - 디지털 금융 안정성 확보를 위한 운영복원력, 금융소비자 보호, 보안 투자 확대 등 규정 마련 필요

3 금융분야 관련 시정책 동향



발표 : 김태주 변호사

법무법인(유) 광장(Lee & Ko) : 2010-현재

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– LLM: 2015

제36기 사법연수원 수료: 2007

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: 2005

□ 금융분야에서 AI 활용

- 신용평가, 로보어드바이저, 이상거래탐지(FDS), 고객응대자동화, 자금세탁방지(AML) 시스템 고도화 등에 활용

□ 인공지능 기본법

- 인공지능 기본법이 2025.1.21. 공포되어 2026. 1. 22. 시행될 예정(세계 최초 전면 시행)
 - 2025.1.15. 하위법령 정비단이 출범하여 올해 상반기 중 시행령 마련 예정
 - 방송통신위원회 (2025.2.28.발표)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
 - (EU) 전세계 최초로 포괄적인 AI 규제법인 EU 인공지능법 2024. 8. 1. 발효
 - (미국) 국가 인공지능 구상법 2020, 미국 인공지능 진흥법
- 인공지능 기본법은 ① 거버넌스 체계 정립, ② 진흥 관련 규정, ③ 규제 관련 규정으로 구성

□ 진흥 관련 정책

- 금융 분야 AI 규제 현황
 - 금융 분야 AI 운영 가이드라인, 금융 분야 AI 개발활용 안내서, 금융 분야 AI보안 가이드라인, 금융 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발표, 금융권 생성형 AI 활용 지원방안 등
- 망분리 규제 완화
 - 기존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망분리 규제, 금융위원회 2024년 8월 망분리 개선 로드맵 발표
 -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규제 특례 허용
 - 자율보안-결과책임 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금융보안체계 구축

□ 규제1 - 고영향 인공지능 규제(인공지능기본법 제30조 내지 제35조)

○ 고영향 인공지능

- 사람의 생명, 신체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,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의미(인공지능기본법 제2조 제4호)
- 금융 분야의 경우 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·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할 경우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

○ 규제 내용

-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사전 검토(제33조) |
| ② 고영향 인공지능의 사전고지(제3조) |
| ③ 검·인증(제30조) |
| ④ 기본권 영향 평가(제35조) |
| ⑤ 안전성·신뢰성 확보 조치(제34조) |
| ⑥ 결과표시의무(제31조 제2항) |
| ⑦ 딥페이크 고지·표시 의무(제31조 제3항) |
| ⑧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(제32조) |

○ 비판점

- 고영향 인공지능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워 규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산업계 의견

□ 규제2 - 이용자 보호 문제

○ 조작, 사기 관련 논란

- 딥페이크임을 밝히는 고지의무가 있더라도 유의미한 위험감소 가능한지 문제
- AI가 투자자문과정에 관여한 경우,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시 금융회사 임직원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문제

○ 편향성, 불공정성, 오류 관련 논란

- 알고리즘 및 데이터의 편향성으로 인해 대출 심사 등에 있어 불공정한 결과 초래 가능
- AI의 판단, AI의 조력을 받은 판단으로 인해 피해 발생 시, 제조물 책임법, 일반 불법행위 책임, 자본시장법상 금융회사 임직원의 선관의무 범위 문제 발생

○ 자동화된 의사결정 관련 규정

- 신용정보법 제36조의2 ‘설명요구권’
-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의2 ‘거부권, 설명·검토 요구권’
- 개인정보 관련 위험
 - 가명정보, 익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정보주체 식별 가능성
 - 프롬프트 입력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
 - 개인정보위, 개인정보보호법 추가 개정 추진을 통해 개인정보 규제 마련 노력

4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동향



발표 : 류경은 교수

금융위원회 가상자산위원회 위원
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: 2021-현재
대법원 재판연구관: 2020-2021
제36기 사법연수원 수료: 2007
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

□ 가상자산 관련 규제

- 특금법 개정 이전에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로 신고 후 영업, 2020. 3. 24. 특금법을 개정하며 금융회사등의 규제에 편입, 자금세탁방지법으로서 한계 존재
- 2024. 7. 19.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(1단계) 시행
 - 산업 육성 보다는 이용자 보호에 초점, 불공정거래규제

<참고1>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령 1단계 입법 주요 내용

- ① 가상자산의 정의,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
 - CBDC(예금토큰), NFT, 전자채권, 모바일상품권 등 제외
- ② 가상자산위원회
- ③ 이용자 자산 보호
 - 이용자 예치금, 가상자산보관, 피해보상, 거래기록 생성·보존
- ④ 불공정거래행위 규제
 - 불공정거래행위(미공개중요정보이용·시세조종·사기적부정거래행위)금지, 손해배상, 임의적 입출금 차단금지, 이상거래 감시
- ⑤ 감독·제재
 - 금융당국의 감독, 한국은행 자료제출 요구, 과징금, 형벌

□ 가상자산거래소의 이해상충 문제

- 거래중개플랫폼이 증권사(중개 및 매매), 한국거래소(상장, 매매, 체결 및 청산), 한국예탁결제원(예탁 및 결제) 등의 역할을 한 곳에서 모두 수행
 - 이는 효율성이 증대되는 측면이 있으나 이해상충

□ 가상자산업의 분류 및 겸업 제한

- 「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」에서 가상자산업의 범위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매매, 교환, 이전, 보관, 관리, 중개, 알선 하는 것으로 규정
 - 자본시장법을 참조하여 체계적 업 분류 필요 : ① 가상자산 거래와 직접 관련된 업 (가상자산시장개설·운영업), ②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되나 구분되는 업(보관관리업, 매매업, 중개업), ③ 이용자의 투자판단과 관련된 업(자문제공업, 일임업, 평가업, 공시업)
 - 가상자산시장 개설·운영업과 이해 상충의 정도가 큰 업부터 겸업을 제한함이 바람직하며 특히, 가상자산 보관업의 경우 이해 상충 우려가 크므로 분리 필요성

□ 진입규제

- 기존 규정
 -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진입 규제 규정 없으며, 특금법에서는 기능별 분류 없이 모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진입 규제(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)
 - 그러나 이는 특금법의 성격상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조치일 뿐, 최소 자본요건 등 건전성 확보와 관련된 규제는 존재하지 않음
- 개선 방안
 - 특금법에 규정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를 향후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시 가상자산기본법으로 이관할 필요성
 - 건전성 규제 차등화 필요

□ 보관자산규제

- 기존 규정
 -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금전과 달리 가상자산을 별도의 관리 기관에 보관하도록 명하지 않음
 - 가상자산거래소 임직원의 횡령·배임 위험, 가상자산거래소의 파산·해킹 위험
- 개선 방안
 - 금전과 같이 별도의 제3자에 위탁할 것을 의무화 제시(효율성에 의문)

- (일본 자금결제법) ① “이행보증 가상자산보관” 의무화, ② “분별관리감사” 받도록 감독 강화, ③ 이용자의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가상자산반환청구권에 우선변제권 부여
- (EU MiCA) ① 보관업자 “분산원장상에서” 고객을 위한 보유분과 업자 자신의 보유분의 분리·보관 의무, ② 가상자산 분실시 업자의 “책임” 이나 “입증책임 부담” 명시

○ 논의점

-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하여도 custody 이슈는 중요하며 이들을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로 볼 것인지, 가상자산법상 보관업자로 볼 것인지 문제

□ 상장 관련 규제

○ 기존 규정

-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상장과 관련한 구체적 기준이 없고, 가상자산거래소의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의 상장행위만을 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규정과 함께 규제
- 상장이나 상장폐지 결정은 DAXA(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)의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율적 규제에 맡겨짐

○ 개선 방안

- 상장규정 마련 의무 대상 확정 : 개별 거래소 혹은 자율규제기구
- 구체적 상장기준 : 일본의 경우 법정 사업자협회인 JVCEA가 신규암호자산판매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여 구체적 상장기준 제시 (한국의 경우 불명확)
- 가상자산거래소에 부실상장 책임 : 형법상 배임수재죄,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13 (신고 등의 직권말소)
- 상장심사의무 해태시 책임 : 상장심사기준마련 및 적합성심사의무 위반시 제재

□ 공시 관련 규제

○ 가상자산 공시규제 특성

- 정보 비대칭 해소목적
- 원칙적으로는(탈중앙화라면) 해당 블록체인 내 공시로 충분할 것이지만, 거래소를 이용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공시 필요성 존재
- 발행인 부존재 하거나 특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

○ 개선 방안

- 발행인을 알 수 없거나 불분명할 경우 거래소가 발행인을 대신하여 공시의무
- 발행인과 거래소 간 명시적 협의가 있을 경우 발행인과 중첩하여 공시의무
- 가상자산거래소가 정보공개의무 (cf.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 미공개정보이용거래 : 정보공개 후 6시간 경과 하면 ‘미공개정보가 아닌 것’ 으로 봄)

□ 이상거래 감시 관련 규제

○ 현행

- 가상자산거래소에 이상 거래에 대한 감시의무를 부과(제12조)
- 의무위반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(제22조)

○ 개선 방안

- 감시의무 위반시 과태료 이외에 영업정지명령이나 임원 제재 등 각종 행정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그 제재를 강화할 필요성
- 이상 거래 감시의무를 비롯하여 해킹·분실 등을 충분히 방어할 만한 시스템 확보의무를 “진입규제” 로 포함
- 그러나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였더라도 가상자산거래소에 직접 민·형사상 책임 묻기 어려움

<참고2> 가상자산기본법 초안(민병덕 의원안 5월 발의 예정) 주요 내용

- 가상자산 발행·유통·공시·상장 등 전체 생태계 포괄하는 종합 법안(2단계 입법)
- 발행인 자격 제한
 - 스테이블 코인에 한하여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발행 불가(인가제)
 - 스테이블 코인 제외한 가상자산도 사전에 당국에 발행'신고'서 의무제출하되, 금융위의 형식 심사 거쳐 '수리'된 것만 발행(신고제)
-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(업권법정협회) 신설
 - 가상자산 상장·상장유지·상장폐지 시 협회 심사
 - 가상자산사업자 의무 가입, 회원사 1곳당 의결권 1개
 - 협회 산하에 상장심사위원회(공시위반, 해킹발생시 직권으로 상장폐지 심사), 시장감시위원회(불공정거래행위 감시)
- 금융위 산하에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(15명 이내의 위원)
 - 기존의 가상자산위원회를 심의·의결기구로서 격상
 - 가상자산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3년마다 수립 의무화
 -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대상으로 매년 1회의 실태조사 의무화



발표 : 한서희 변호사

법무법인(유) 바른: 2011-현재

금융위원회 가상자산검사·감독 준비단 TF: 2023

제39기 사법연수원 수료: 2010

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: 2008

□ 배경

- 특금법 및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으나,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미발급으로 인해 투자가 ‘사실상 불가능’

□ 실명확인입출금계정 서비스 도입 경위

- 본인임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계좌와 가상통화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 입출금을 허용함(1대1 매칭)
 - 자금세탁위험 및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목적
 -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가 없으면 사실상 거래소 계좌 개설이 어려움
 - 금융회사의 경우 가상자산 보유 매입 담보취득 지분투자 금지
- 법제화 : 개정 특금법 시행(2021.3.25.) 및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 도입
 - 가상자산거래소는 금융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며, 신고 수리된 사업자는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(CDD),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(EDD), 의심거래보고 의무(STR)을 부담
 - 원화교환 가능한 거래소 운영 요건으로 ①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취득, ②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받았어야 함
- 법인투자의 실질적 금지
 -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, 법인의 경우 원화거래소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
 -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전에는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가입하기도 하였으나, 개정법 시행 이후 고객확인 의무 도입으로 인해 제3자(대표이사등)를 통한 거래 금지
 - 2023년 국세청에 따르면 73개 법인이 120조원을 해외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보유

□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 논의

○ 해외 동향

- 2025. 1. 트럼프 정부 2기에서 스테이블 코인법안, 비트코인 전략자산화, 비트코인 현물 ETF의 활성화 정책
- 해외의 경우 개인보다 ‘법인’ 중심으로 가상자산 생태계 형성
ex. 미국 Coinbase의 기관투자자 비중이 80% 이상

○ 2024. 11. 6. 가상자산위원회의 권고

- 가상자산 현금화 필요법인의 가상자산 매도 허용 필요성
 - ① 국세청, 검찰, 지자체 등 법집행기관에서 몰수 압류한 가상자산 처분 필요
 - ② 학교 및 기부단체에서는 기부 받은 가상자산 처분 필요
 - ③ 가상자산거래소에서는 수수료 수취한 가상자산 처분 필요
- 투자 및 재무목적 매매 허용 : 자금세탁방지 장치 보완, 공시 강화, 투명성 제고
- 금융회사에 대한 신중한 접근

□ 법인 참여 로드맵

<개요>
○ 1단계 : 법집행기관(즉시), 비영리법인 및 가상자산거래소(25. 2분기)에 대해 현금화목적 법인계좌 개설 우선허용
○ 2단계 : 금융회사 제외한 전문투자자(상장법인, 전문투자자등록법인)(25. 하반기~)
○ 3단계 : 일반법인은 추후 외환 세제 등 관련제도 정비와 연계하여 중장기 검토

○ 1단계 : 법집행기관, 비영리법인, 가상자산거래소

- 법집행기관은 이미 2025. 1. 기준 202개 계좌 이미 개설
- 비영리법인은 내부통제기준(사전심의위원회 등 통제기구, 가상자산의 현금화 시기나 매각방법 사전 설정) 마련 후 계좌 발급
-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사업자 공동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그에 따른 계좌 발급 추진 (가상자산 종류 제한, 일·월간 매도물량 제한, 자기거래소 매매 제한)

- 2단계 : 25. 하반기 이후 투자·재무 목적의 거래 시범 허용
 -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주권상장법인(약 2,500여개),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법인(약 1,000여개)
 - 매도거래, 매수거래 모두 시범허용
 - 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통해 국내 시장 변동성 완화의 효과, 국내 기업 포트폴리오 다변화
 -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보완 가이드라인 및 모니터링 방안 마련 후 허용 예정
- 3단계 : 금융회사까지는 조심스러운 입장
 - 바젤3에서 은행의 경우 투자위험 가중치를 125%로 부여, 미국회계 원칙 SAB121은 폐지
 - 이는 모두 고객자산으로 투자할 경우 해당되며, 금융회사의 자기자본 투자를 제한하는 것은 아님
 - 비트코인 현물 ETF의 출시를 위하여는 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가 직접 보유 요함
 -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에도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보관해야 하므로,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돼야 함

□ 법인거래와 관련한 법적 쟁점

-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개설
 - 실명확인증표 : 사업자등록증명 및 상업등기법·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발급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제출
 -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 : 법인의 실소유자 확인 → 최대 주주 확인 → 대표자 확인 단, 국가 지자체 등에 대하여는 실소유자 확인의무 면제 (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5)
 -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으로 개설 : 영상통화/법인담당자 개인의 실명확인증표사본 중 택1, 소액이체요청
- 자금출처 확인
 - Coinbase의 경우 입금된 가상자산 및 법정화폐에 대한 자금 출처를 확인함
- 매도·매수 가이드라인 및 공시 의무

- Coinbase의 경우 매각 매수 담당자 지정되어 있으며, 매각 전담팀이 시장 유동성을 사전에 분석하여 수량과 방식을 정하여 매각함
- 법인의 매도·매수를 과도하게 제한적으로 규정할 경우 일반 이용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매도·매수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고려 필요
- 유동성이 작은 거래소, 가상자산의 경우 매도나 매수 주문 있을 경우 가격 변동성이 극심해질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고려 필요
- 지갑 및 자산에 대한 위험 평가
 - 법인보유 가상자산 입고 및 출고는 등록된 지갑을 통해 수행하도록
 - 이 지갑에 대한 위험 평가 필요하며,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제시하여 사업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할 필요

6 소결

- 금융의 디지털화에 관한 다양한 규율들이 정비되고 있으며, 금융소비자보호(규제) 측면과 산업진흥 측면 양자 간 균형을 고려한 입법 및 규제체계 마련이 진행되고 있음
- 금융보안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을 통한 원칙 중심 규제, 자율 규제 방향
- 최근 AI 기본법 제정, ① 향후 고영향 AI가 무엇인지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며, ② AI를 활용한 업무수행에 대해 결과책임이 발생할 경우 AI를 활용한 자에 대한 책임 범위 및 소재가 문제
- 가상자산 2단계 법안, 가상자산거래 전반에 대한 규율체계마련
-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허용되며 보다 안정적인 가상자산시장이 형성될 것이 기대